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70호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체납된 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대상에게 납부 독촉문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규

- 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나. 국세징수법 제 24조(강제징수)
-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10.17.~ 10.31.)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상 호)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오지* (예쁜꽃집)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길 *	3,804,320	국유대여료
		220,290	가산금

4. 공고기간 내에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기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42) 611-125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